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**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·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◆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

◆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| 구 분 | 대 상 사 업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필수 |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|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'18~'22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, 그 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※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(§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|
| |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|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2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|
| 권장 |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|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|

◆ **제외대상 :**

- 제외대상 :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 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 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 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**성인지 예산서 성격 :**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(예산서 부속서류)